

품목분류
CASE 3 웨어러블 센서 기기

판정번호
N360915

물품 정보

용도

- 손목 착용형 헬스케어 밴드
-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

구조

- 센서: 가속도계, 피부 온도센서, 주변 온도센서, 광혈류 측정센서
- 블루투스 송수신기
- 플라스틱 하우징 및 스트랩

쟁점 HS



제 8517 호

데이터 송수신용 기기

제 9031 호

그 밖의 측정용·검사용 기기

CBP 판단

- 쟁점물품은 생체 지표 측정 기능(제90류)과 블루투스 통신 기능(제85류)을 함께 갖춘 헬스케어 기기로, 복합기계에 해당
- CBP는 복합기계의 주된 기능을 측정 기능(센서)으로 판단
- 생체 지표 측정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 센서(심박수 측정, 체온 측정, 가속도계)는 제90류 내에서 각각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나, 어느 하나가 다른 기능보다 주된 기능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움

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각 센서가 분류되는
품목번호 중 마지막 번호인 제9031호로 분류



미국 HS-CODE 결정

9031.80

그 밖의 측정기기